

— 구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문화·복지·여가 기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.
-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·운영의 근거 마련.

3. 주요내용

【 주민자치센터 】

-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듣고 시장이 결정(제4조)
- 운영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하되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 (제7조, 제10조)
-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 보상 근거(제13조)

【 주민자치위원회 】

-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(제15조, 제16조)
-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(15인이상 25인이내)(제17조)
-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이나 실비 보상 근거(제23조)
- 위원회 기능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개발자문위원회 및 동번영회 폐지(부칙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8조
-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

5. 검토의견

-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도농복합시에 대한 2단계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.
-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사무와 인력을 조정정비하고 여유시설 공간을 주민의 복지와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로서
-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3개 읍면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으며 4개 시군(경산, 청송, 고령, 예천)에서 조례안을 가결하였고 7개 시군에서 심의를 보류하고 있으며 미상정된 시군은 11개 시군입니다.(별첨자료 참조)